# 천주교 부산교구

우) 48317 부산 수영구 남천서로 32번길 21 ☎ 051)629-8740 FAX 629-8749 청소년사목국 purunnamu@catb.kr

선 문서번호 **교구 제21-022호** 지 결 시행일자 2021. 2. 8. 시 일자 접 (경유) 시간 곀 수신 제위신부 수 재 공 처리부서 참조 주일학교.청년 담당수녀 람 주일학교장, 대표교사 담 당 자

제목 <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회 (안)>에 대한 제안



◆ 신앙과 말씀의 해

청소년사목국에서는 <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회 (안)>을 제안합니다. 2~3월의 지구 회의에서 <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회 (안)>을 논의 후 의견을 취합하여, 사제평의회(3월 24일)에서 최종결정하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. 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의 선출은 사제평의회 후 지구 회의에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<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회 (안)> 1부. 끝.

천주교 부산교구 총대리 권 지호 붙임.

# <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회 (안)>

## I. 목적

각 지구에 맞는 청소년·청년 사목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구의 주임, 부주임, 보좌 신부님과 지구 내 뛰어난 평신도를 선발하여 「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회」를 구성하며, 교구 청소년사목국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상호 협력함으로써, 교구 사목방침을 지구에서 실행하기 위함이다.

## II. 명칭

「ㅇㅇ 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회」(지청위)라고 하고, 그 위원장을 「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」(지청장)이라 한다.

지구 담당 사제는 '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'의 임명을 받아 지구 내 연합회를 담당하는 사제를 말한다.

## III. 「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」선출

「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」의 선출은 각 지구에서 활동하는 주임급 사제 가운데 지구회의를 통해 선출한 뒤 교구장이 인사발령을 낸다.

#### IV. 「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」의 임무

- 1. 각 지구의 청소년·청년 관련 모든 연합회의 지구 담당 사제 임명 및 지구 청소년위원회 구성
- 2. 각 지구의 청소년·청년 관련 연합회의 총괄 업무 직권
  - 1) 초등부 교사연합회
  - 2) 중고등부 교사연합회
  - 3) 고등학생 연합회 (유니트)
  - 4) 청년 연합회
  - 5) 부모회
- 3. 각 지구의 청소년·청년 관련 회의 주재
  - 1) 지구 청소년·청년위원회 회의 (매월)
  - 2) 지구 내 본당 청소년분과장 회의 (분기별)
  - 3) 각 지구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청소년사목국으로 발송하면 청소년사목국에서는 모든 지구의 회의 록을 취합한 후 각 지구로 발송함으로써 회의 내용을 공유한다.

- 4) 「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」이 주재하는 청소년·청년 관련 회의의 총무는 지구 총무가 맡는다 (단, 지구 상황에 따라 「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」이 지명할 수 있다).
- 4. 「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」의 교구 회의는 분기별로 가지며, 사제평의회 전에 실시한다.

# V. 예산

- 1. 지구 내 각 연합회에서는 연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작성한다.
- 2. 지구회의를 통해 승인된 예산은 지구 내 본당 비율에 따라 책정한다.
- 3. 「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」은 예산 검토 후 승인 및 실행 감독한다.
- 4. 지구 담당 사제는 예산에 따른 결산 내역을 연말 지구회의 때 보고한다.

## VI. 활동비

- 1. 「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」의 활동비는 지구에서 직접 「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」에게 전달하고, 지구 담당 사제(초등부/중·고등부/청년/부모회)의 활동비는 각 연합회의 예산 작성 시 포함한다.
  - 1) 「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」의 활동비: 최소 매달 100,000원
  - 2) 지구 담당 사제의 활동비: 각 연합회 회의 시 최소 100,000원
- 2. 「지구 청소년·청년 전담 사제」의 활동비는 「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」의 활동비를 기본으로 받고, 특별 한 계획 실행 시 청소년사목국과 협의하여 지원비를 획득한다.
- 3. 「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」과 지구 담당 사제의 활동비 내역을 연말 지구회의 때 보고한다.

#### VII. 임기

- 1. 「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」과 지구 담당 사제의 임기는 2년이며, 연임도 가능하다.
- 2. 「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」이나 지구 담당 사제가 인사이동 및 기타의 사유로 공석일 경우, 새로 선출된 「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」이나 지구 담당 사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일을 임기로 한다.
- 3. 「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」은 당해 11월~12월의 지구회의에서 선출하고, 다음 해 1월 정기 인사발령 이후 지구 담당 사제를 지명한다.
- 4. 「지구 청소년·청년 위원장」의 교구장 임명은 직능 사제 인사발령에 반영된다.
- 5. 각 지구 연합회의 총회는 당해 12월~다음 해 1월 안에 시행한다.

# VIII. 본당 청소년위원회

- 1. 본당 청소년분과와 본당 청소년위원회는 다르지 않다. 곧, 청소년분과장과 차장을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2. 본당 청소년분과회의는 매월 개최된다.
- 3. 본당 청소년분과회의 당연직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.
  - 1) 본당 청소년분과 담당 사제
  - 2) 본당 청소년분과 담당 수녀
  - 3) 청소년분과장과 차장 그리고 청소년분과를 담당하는 본당 부회장
  - 4) 초등부 교사대표
  - 5) 중고등부 교사대표
  - 6) 청년회 대표
  - 7) 부모회 대표
- 4. 본당 청소년분과 활성화를 위해 본당 회장이 참여할 것을 권고하며, 사각지대에 놓인 사목 대상을 위해 복지분과장의 참여도 권장한다.
- 5. 본당 청소년분과 회의 결과는 본당 사목협의회에 반영하고, 본당 청소년분과장은 지구 내 본당 청소년 분과장 회의 때 알리고 공유한다.